

case
1

일체형 냉장·냉동고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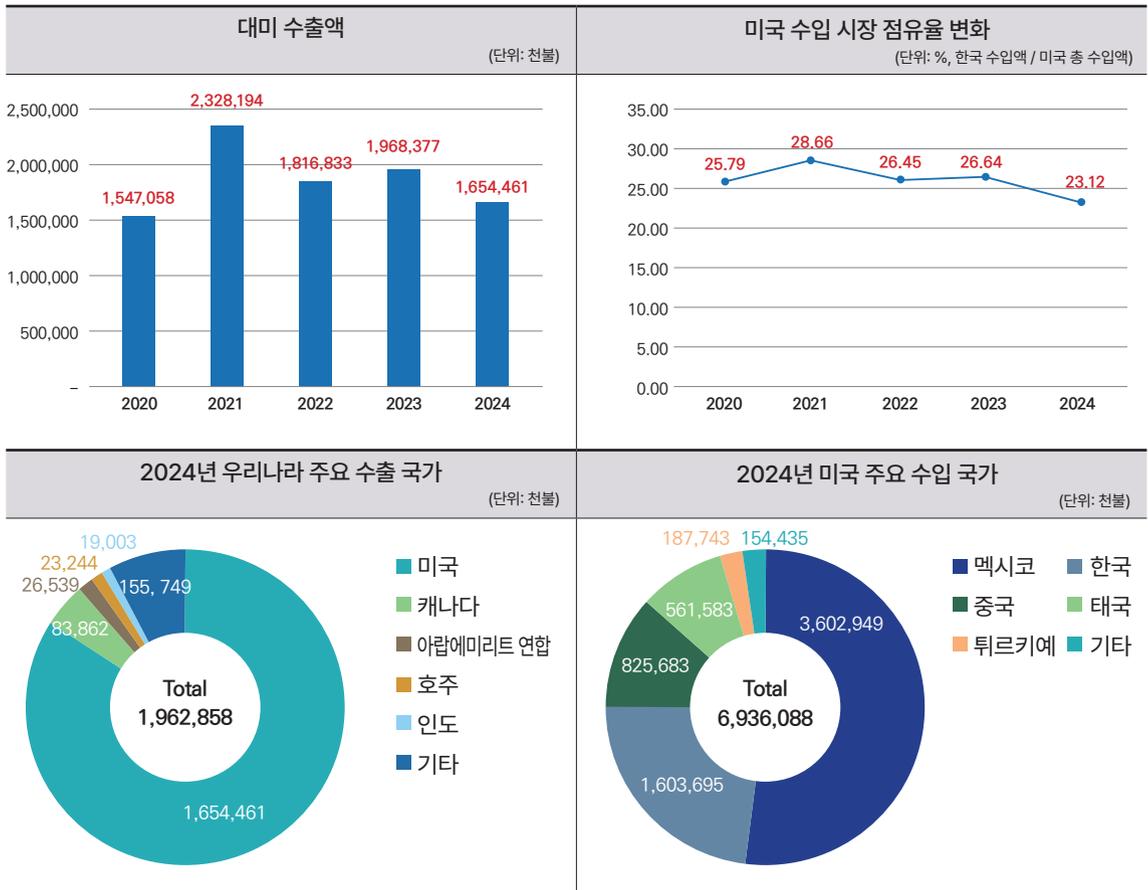
사례명	일체형 냉장·냉동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HQ H314180 (2021.01.22.)
사실관계	미국, 중국, 멕시코, 폴란드, 스웨덴,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생산된 부품을 멕시코에서 조립하여 생산한 일체형 냉장·냉동고를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p>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p> <p>시나리오 1 냉각 유닛 어셈블리, 통합 제어 배선 어셈블리, 핀 팩 어셈블리,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등 일체형 냉장·냉동고의 구조적·기능적 주요 요소들이 중국에서 제조되므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중국산)</p> <p>시나리오 2 냉각 유닛 어셈블리는 여전히 중국에서 제조되지만, 통합 제어 배선 어셈블리, 핀 팩 어셈블리,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등 일체형 냉장·냉동고의 전반적인 기능을 보조하는 일부 구성품의 제조가 멕시코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멕시코에서의 공정이 최종 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압도적으로 높은 바,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멕시코산)</p>
근거법령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418.10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제8418.10호부터 제8418.69호까지 이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418.91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8418.10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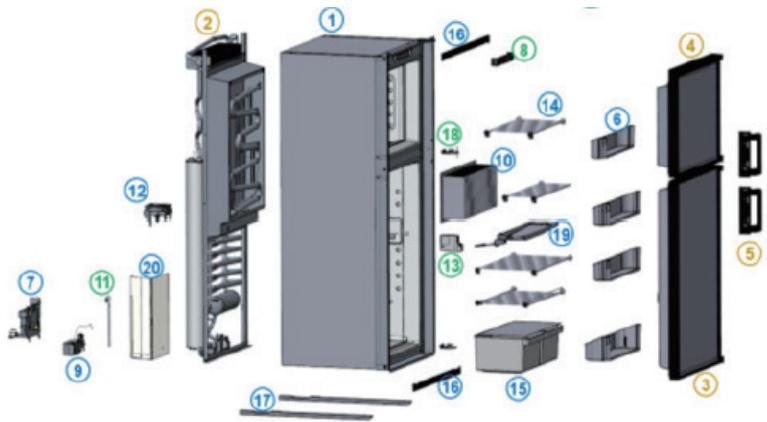
사 례 명 [일체형 냉장·냉동고]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사례번호 HQ H314180 (2021.01.22.)

사실관계

요청자 Dometic North America (대리인: Expeditors Tradewin, LLC)

- 제품명**
- 일체형 냉장·냉동고 (모델명: DM2672)
 - 190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



**구성
제품**

구분	명칭	구분	명칭
1	캐비닛 어셈블리	11	히터 어셈블리
2	냉각 유닛 어셈블리	12	팬 어셈블리
3	냉장실 도어 어셈블리	13	LED 조명 어셈블리
4	냉동실 도어 어셈블리	14	철제 선반
5	도어 손잡이 어셈블리	15	야채 보관 서랍 및 덮개
6	도어용 플라스틱 선반	16	아이브로우 및 킥플레이트
7	전원 제어 모듈 어셈블리	17	캐비닛 지지대
8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18	도어 경첩
9	가스 밸브 버너 어셈블리	19	응결수 받이
10	핀 팩 어셈블리	20	하부 플레이트 어셈블리

용도 • 냉장 및 냉동 기능을 모두 갖춘 일체형 기기

**완제품
HTSUS** • 8418.10.00

제조과정



상세공정

시나리오 1

1. 여러 구성품을 멕시코로 수입 및 조달(멕시코산 46%, 중국산 44%, 미국산 8%, 기타 2%)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비닛 어셈블리 · 가스 밸브 버너 어셈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 제어 모듈 어셈블리 · 철제 선반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 유닛 어셈블리 · 통합 제어 배선 어셈블리 · 핀 팩 어셈블리 · 도어 어셈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단 도어용 플라스틱 선반 ·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 LED 조명 어셈블리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 호스 · 응결수 받이 · 보조 버너 하우징 및 플레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어 손잡이 어셈블리 · 중간 도어용 플라스틱 선반 · 야채 보관 서랍 및 덮개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터 어셈블리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미스터 어셈블리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플 어셈블리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드웨어 부품 	

2. 멕시코에서 각종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 제품 생산

3. 테스트 및 포장

4. 미국 수출

시나리오 2

1. 여러 구성품을 멕시코로 수입 및 조달(멕시코산 69%, 중국산 29%, 미국산 0.07%, 기타 1.93%)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비닛 어셈블리 · 가스 밸브 버너 어셈블리 · 전원 제어 모듈 어셈블리 · 철제 선반 · 통합 제어 배선 어셈블리 · 핀 팩 어셈블리 · 도어 어셈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단 도어용 플라스틱 선반 · 중간 도어용 플라스틱 선반 ·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 배수 호스 · 응결수 받이 · 보조 버너 하우징 및 플레이트 · 도어 손잡이 어셈블리 · 야채 보관 서랍 및 덮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 유닛 어셈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조명 어셈블리

폴란드	· 히터 어셈블리
스웨덴	· 서미스터 어셈블리
인도네시아	· 배플 어셈블리
대만	· 하드웨어 부품

2. 멕시코에서 각종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 제품 생산
3. 테스트 및 포장
4.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1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681 F.2d 778 (1982)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사례별로 이루어짐
- CBP는 새롭고 상이한 상업적 물품을 ①상업적 명칭 또는 정체성의 변화, ②본질적 성질의 변화, ③상업적 용도의 변화를 겪은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행된 작업의 범위, 해당 부품 또는 자재들이 개별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물품의 필수 구성요소로 통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2016)

사례 손전등 생산을 위한 약 50여 개의 원재료 중 백색 LED 및 Hydrogen Getter를 제외한 모든 원재료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에서 조립

판결 수입된 구성 요소들이 완제품으로 조립된 후에도 개별 부품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수입 당시 이미 손전등 부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조립 과정에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

- CBP는 본 사안의 판정을 위해 냉동 장치와 관련된 다음의 판정 사례를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9293 (2020.02.25.)*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7836 (2019.12.17.)*

❖ 참고 판정: *CBP Ruling NY N305178 (2019.07.25.)*

**관련 법령
및 분석**

판정 결과

- ☑ 냉장 및 냉동고의 냉각 기능을 발생시키는 핵심 구성 요소는 콘덴서(condenser), 압축기(compressor), 팽창장치(expansion device), 증발기(evaporator)로, 이 구성 요소들은 제어장치, 열원, 기타 보안 구성 요소들과 결합될 때 비로소 냉각 유닛으로 완성되며, 본 사안에서 이러한 냉각 유닛은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중국에서 생산함
- ☑ 다만, 냉장 및 냉동고의 핵심 기능이 여전히 냉각 기능에 있다고는 하나, 냉장 및 냉동고로서의 외형 확보, 적정 온도 유지, 열 흡수 등 보조적인 기능들 또한 최종 제품의 기능을 형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이므로, 총체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나리오 1 냉각 유닛 어셈블리, 통합 제어 배선 어셈블리, 핀 팩 어셈블리,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등 일체형 냉장·냉동고의 구조적·기능적 주요 요소들이 중국에서 제조되며,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함

시나리오 2 냉각 유닛 어셈블리는 여전히 중국에서 제조되지만, 통합 제어 배선 어셈블리, 핀 팩 어셈블리, 디스플레이 제어 인터페이스 등 일체형 냉장·냉동고의 전반적인 기능을 보조하는 일부 구성품의 제조가 멕시코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멕시코에서의 공정이 최종 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압도적으로 높은 바,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

결론

- ✓ **시나리오 1**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중국으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
- ✓ **시나리오 2**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멕시코로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이 아님

III 시사점

- 본 사안과 같이 핵심 구성요소와 더불어 여러 어셈블리들이 결합되어 완성되는 물품의 경우, CBP는 총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핵심 구성요소의 원산지가 아닌 최종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높은 국가를 원산지로 고려하기도 함

IV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14180 (2021.01.22.), <https://rulings.cbp.gov/ruling/H314180>
- CBP Ruling NY N309293 (2020.02.25.), <https://rulings.cbp.gov/ruling/N309293>
- CBP Ruling NY N307836 (2019.12.17.), <https://rulings.cbp.gov/ruling/N307836>
- CBP Ruling NY N305178 (2019.07.25.), <https://rulings.cbp.gov/ruling/N305178>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